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제도 개선〉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64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설치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재평가(안 9조의2제3항 신설 및 제9조의3제3항·제4항)	3
2. 건축주의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9조의5 신설)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4. 21.
3.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교체·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III. 검토의견

1. 설치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재평가(안 9조의2 제3항 신설 및 제9조의3제3항·제4항)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함)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미술작품 가치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 관리실태 정기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3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점검 및 재평가 결과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u>감정·평가</u>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	② ----- <u>감정·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재평가</u> ----- ----- -----

현 행	개 정 안
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u>그 밖에</u>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u>점검 결과</u> 필요하다고 인정하	-----. ③ 시·도지사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존치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다. ④ ----- -----제3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절차, 그 밖에 ----- -----.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점검 및 제9조의2제3항에 따

현행	개정안
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u>철거</u>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u>철거</u>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큰 재평가 결과</u>----- ----- -----. -----. 1. (현행과 같음) 2. ----- -----이전 <u>· 철거</u>----- -----이전·철거---- - ⑤ 제3항에----- -----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의 조형예술물 또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임.¹⁾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1972년 도입되어 약 50년간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21만여 건의 작품이 설치되었고, 총 작품 설치 비용은 1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²⁾ 2024년 1,384억원이 소요되어 853점의 작품이 설치되었음.³⁾

미술작품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설치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

또한, 노후화된 미술작품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작품의 훼손으로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변지혜·김현경·이희재,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p. 3.

3)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조사 2025”, 2025, p.165.

붕괴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공공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설치 이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 작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768호, 2022. 1. 18. 일부개정)에 제9조의3⁴⁾을 신설하여 건축주의 미술작품 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조치 명령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아울러, 현행법 시행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하며, 관리총괄표를 시·도지사를 거쳐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이러한 법령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의 재평가 및 존치 기간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도지사에게 관리실태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점검 및 재평가 결과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이전 조치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미술작품의 예술성과 도시 미관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미술작품을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정기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시·도지사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특히, 개정안은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제도(Percent for Art Program)가 도입된 미국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시 등에서 작품의 철거를 설치 후 10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도 미술작품의 철거는 설치 후 최소 10년이 경과해야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안한 점⁶⁾을 고려할 때 10년의 기간 설정은 합리적인 범위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점검 및 재평가 결과에 따른 미술작품이 철거·훼손된 경우 등의 원상회복 조치와 노후화 등의 사유로 인한 보수 또는 이전·철거 등의 조치 명령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없음.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재평가와 현행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정기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건

6) ㈜스페셜아트,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2021 연구용역 보고서, 2021.

축주가 조치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등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안 제9조의3제3항 후단의 시·군·구청장의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의무화하는 조항은 기존 시행령으로 입법목적이 충족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재평가 기준·절차 및 재평가 결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 및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 준비기간 확보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대신 ‘1년’이 경과한 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함.

한편, 한국조각가협회와 한국화랑협회는 재평가 기간을 20년 이상 경과한 미술작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전·철거는 작품의 안전상 중대한 하자 또는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문구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재평가 기준·절차에 대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 건축주의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근거 마련 (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9조의5 신설)

개정안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 대하여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미술작품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9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u> <u>제9조의5(미술작품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한 건축주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적립한</u>

현 행	개 정 안
	<u>유지관리 총당금 금액을 한도로 하</u> <u>되, 건축주가 유지·관리에 기울인</u> <u>노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u> <u>원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u> <u>·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한다.</u>
<u>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u> (생 략)	<u>제9조의6(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u> (현행 제9조의5와 같음)

현행법 제9조의3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된 경우 건축주에게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거나, 미술작품이 노후화된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미술작품은 건축주가 소유권을 가지며, 건축주 입장에서는 소유권 행사의 한 측면인 미술작품의 관리에 대하여 국가가 철거 등을 명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7)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임.⁸⁾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축주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건축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충분히 보상하도록 하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으로 이해됨.

특히, 개정안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경우, 기본적으로 그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미술작품을 유지·보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건축주 소유재산의 가치를 보전해주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충당금 금액을

8)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도로 기반시설의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⁹⁾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사후관리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건축주 개인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지원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

9)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총당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자체 성능개선 재원 확보 노력, 성능개선기준의 충족도,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지원비율과 제5항에 따라 정한 성능개선 비용 지원 한도를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총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총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성능개선 총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미술 작품 설치 비용에 포함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험의 보급과 가입·관리 사무를 수행할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 유지관리 충당금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수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한국화랑협회는 충당금의 적립 주체 및 운영 주체 상이 등 실제 운영시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시행령 등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